

예산총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0,712,497	14,421,375
일반회계	455,128,255	13,653,848
특별회계	25,584,242	767,527
기타특별회계	25,584,242	767,527
상수도사업	2,712,621	81,379
하수도사업	2,422,921	72,688
수질개선	7,335,405	220,062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9,900	17,097
의료급여기금	998,243	29,947
소득특화사업	5,245,796	157,374
농공단지조성사업	1,462,558	43,877
공영개발사업	4,672,860	140,18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63,938	4,91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사업조서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,579,12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